[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 2026-0425호 (2026-11-16)]

# MMW형 CMA설명서

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

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 ● 투자위험등급: 6등급(매우낮은위험)

**MMW형 CMA** 상품은 투자위험등급 **6등급[매우낮은위험]** 에 해당합니다.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투자 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

| 투자자 성향 | | 공격투자형 | 적극투자형 | | 위험중립형 | 안정추구형 | 안정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품 투자위험 등급 | 위험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
| | 위험도 | 매우높은위험 | 높은위험 | 다소높은위험 | 보통위험 | 낮은위험 | 매우낮은위험 |

| 유동성위험 | 중도매도(환매)불가 [ ] | 중도매도(환매)시 비용발생 [ ] | 중도매도(환매)가능 [ ○ ] |
|---|---|---|---|

## 핵심(요약) 설명서

이 핵심 설명서는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<table>
<tr><th>필수 설명 사항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투자대상</th><th>특징</th><th>수익률형태</th></tr>
<tr><td>MMW-CMA</td><td>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</td><td>- 고객과 일임형 랩계약을 통해 회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임<br>- 매 영업일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<br>- 이자, 수수료, 세금을 일일 정산방식으로 처리</td><td>실적배당</td></tr>
<tr><td>RP-CMA</td><td>투자적격 원화표시채권</td><td>- CMA 서비스 약정을 통해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RP를 매수<br>- 이자 및 세금은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정산<br>- 매수된 RP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시 재투자 될 수 있으며 재투자 시점에는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매수</td><td>약정수익률</td></tr>
<tr><td>발행어음-CMA</td><td>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</td><td>- CMA 서비스 약정을 통해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발행어음 매수<br>- 이자 및 세금은 일일정산 방식으로 처리되며 예수금으로 현금화한 후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매수</td><td>약정수익률</td></tr>
<tr><td>MMF-CMA</td><td>MMF</td><td>- MMF-CMA 서비스 약정 계좌로 입금 시, RP자동 매수 후 익영업업일에 전액 환매하여 MMF로 자동 매입 신청되며, 매입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<br>- 운용 MMF 종목 수익률에 연동되는 CMA</td><td>실적배당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</td><td>• 발생가능한 불이익<br>- MMW형 CMA는 매 영업일 정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.<br>- MMW형 CMA는 매 영업일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재투자되므로 기준금리 변동시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br><br>• 투자위험 등급: 6등급[매우 낮은 위험]<br>-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에서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까지 분류하고있으며, 본 상품은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<br><br>• 유의사항<br>-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<br>- MMW형 CMA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기 이전의 총 이자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따라서 수수료를 차감한 순 이자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 할 수 있습니다.<br>이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법률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투자 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/td></tr>
<tr><td>민원, 상담 연락처</td><td>•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(1544-5000)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고객의 소리(이용안내→고객센터/FAQ→고객의 소리), 본사 민원담당부서(02-3276-4334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
◇ 당사는 랩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설명서 68호 A4
(2026.11.20 개정)

# MMW형 CMA설명서

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

## 투자자 유의사항

-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MMW형 C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,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- 이자, 수수료 , 세금을 일일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며, 보수 과세 효과로 세전 수익률과 세후 환산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수수료율, 산정방법, 징구시기 등은 CMA 운용조건 등이 변경 될 경우 기존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
- MMW형 CMA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기 이전의 총 이자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함
  따라서 수수료를 차감한 순 이자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 할 수 있음
  이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법률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투자 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
- 투자일임결과에 대한 책임사항
  - 예탁 자산의 운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투자자산운용사의 객관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,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
  - 제시된 수익률은 확정 고정금리가 아니며,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정책 기준 금리 등에 따라 변동
-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운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음
- 고객은 최초 투자일임계약 이후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, 추가 예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으로 한정
  단, 향후 시장상황 및 운용상 필요한 경우 추가 입금이 제한 될 수 있음
- 회사가 정한 시간(마감 전)에 입금에 대해서는 MMW 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탁금이용료 지급
  예탁금이용료는 시장금리변동 및 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  ① MMW형 CMA 금리 적용기준시각 – 영업일 17:00 이전 입금분에 한해 MMW 금리 적용
  ② MMW형 CMA 예탁금이용료 지급 시간 영업일 17:00~23:40, 및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입금분
  ③ 입출금액 제한기준시각 – 영업일 17:00 이후
  영업일 17:00 이후 한도 : 입금-개인 2억/법인 5억
  출금-고객 온라인 이체 한도 내 최대 5억
  (금액한도는 각 요일별 한도, 예) 토요일, 일요일 각각 개인고객 2억 입금/5억 출금 가능)
- 본 자료는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약관, 계약권유문서 등 계약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 랩 서비스 개요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계약기간 | 제한 없음 | 가입대상 | 개인 또는 법인 |
| 가입금액 | 제한 없음 (법인의 경우 입금 한도 제한 가능) | 위험도 | 6등급 [매우 낮은 위험] |
| 수수료 | 연 0.05% (전일 잔고 기준 매 영업일 정산) | 수익률 | 정책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금리 변경 시 공지 |
| 투자 대상 |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등*<br>※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, 한국산업은행 · 중소기업은행의 예금 | **추가입금** | 가능<br>(입금 제한 기준시각 및 한도 별도, 법인의 경우 한도 제한 가능) |
| | | **일부출금** | 가능(출금 제한 기준시각 및 한도 별도) |

## 계약의 해지

- 고객에 의한 해지
  - 고객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
  - 고객이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  -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투자자산운용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- 회사에 의한 해지
  -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, 회사는 그 사실을 사전에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통지

◇ 당사는 랩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설명서 68호 A4
(2026.11.20 개정)

## 참고: 자산배분 유형군 분류 기준

| 자산배분유형군[주1] | | 세부자산배분유형군 | 분류기준 | 적합투자자성향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형[주2] | 주식자산 [주식+현금성자산] | 공격투자형 | 해외주식 수준의 위험도 이하 주식자산(ETF 포함) 편입 가능 | 공격투자형이상 |
| | | 적극투자형 | 국내주식 수준의 위험도 이하 주식자산(ETF 포함) 편입 가능 | 적극투자형이상 |
| | 채권자산 [채권/CP/CD+ 현금성자산] | 공격투자형 | 신용등급 B+이하(단기등급 B이하) 채권 또는 무등급 채권 편입 가능 | 공격투자형이상 |
| | | 적극투자형 | 신용등급 BB- 이상 채권 편입 가능 | 적극투자형이상 |
| | | | 신용등급 BBB- 이상 (단기등급 A3 이상) 채권 편입 가능 | |
| | | 위험중립형 | 신용등급 A- 이상(단기등급 A2 이상) 채권 편입 가능 | 위험중립형이상 |
| | | 안정추구형 | 신용등급 AA- 이상(단기등급 A1이상) 채권 편입 가능 | 안정추구형이상 |
| | | 안정형 | 신용등급 AAA 이상 채권, 국고채, 통안채, 지방채, 특수채, 정부보증채 채권 편입 가능 | 안정형이상 |
| 포트폴리오형[주3] | 집합투자증권자산 [펀드+현금성자산] | 공격투자형 | 매우높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100% 이하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공격투자형이상 |
| | | 적극투자형 | 높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0~10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적극투자형이상 |
| | | | 높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0~8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|
| | | 위험중립형 | 높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0~6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위험중립형이상 |
| | | 안정추구형 | 낮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0~10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안정추구형이상 |
| | | 안정형 | 매우낮은위험 집합투자증권 기준 0~10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안정형이상 |
| | 복합자산 [주식/펀드/채권 (CP,CD)/기타자산+ 현금성자산] | 공격투자형 | 매우높은위험 자산 기준(해외주식, 초고위험 펀드, 투기등급 채권 등) 100% 이하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공격투자형이상 |
| | | 적극투자형 | 높은위험 자산 기준(국내주식, 고위험 펀드 등) 0~10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적극투자형이상 |
| | | | 높은위험 자산 기준(국내주식, 고위험 펀드 등) 0~8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|
| | | 위험중립형 | 높은위험 자산 기준(국내주식, 고위험 펀드 등) 0~60%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위험중립형이상 |
| | | 안정추구형 | 낮은위험 자산 기준(낮은위험 펀드 등) 0~100% 이하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안정추구형이상 |
| | | 안정형 | 매우낮은위험 자산 기준(매우낮은위험 펀드 등) 0~100% 이하 수준의 위험도로 운용 가능 | 안정형이상 |
| 현금성자산 | | 수시형 | 증금예치 방식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| 안정형이상 |
| | | 기간형 | 특정 만기를 설정하여 기간별로 예치하는 상품 | |
| 맞춤형 | | 맞춤형 | 고객의 니즈와 투자관련 제약 사항을 반영하여 일대일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 | - |

주1) 주식, 집합투자증권, 채권자산, 파생결합증권 등 전체자산 위험등급은 당사 투자위험등급지도를 따름
주2) 일반형의 경우 편입가능 자산의 최고위험등급을 해당 랩어카운트의 위험등급으로 간주
주3) 포트폴리오형이란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랩어카운트이며 당사 투자위험등급지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계산을 따름. 단, 포트폴리오형 중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계산에 부합하더라도 상품투자위험등급이 5등급, 6등급인 경우 4등급 이상 위험도 자산은 편입 불가

※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,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.

| 세부자산배분유형군 | 예상위험수준[주1] | 상품투자위험등급 |
|---|---|---|
| 공격투자형 |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,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수준의 위험 | 1등급 : 매우높은위험 |
| 적극투자형 | 최대 투자원금 전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수준의 위험 | 2등급 : 높은위험<br>3등급 : 다소높은위험 |
| 위험중립형 | 투자원금의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수준의 위험 | 4등급: 보통위험 |
| 안정추구형 |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,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수준의 위험 | 5등급: 낮은위험 |
| 안정형 | 투자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수준의 위험 | 6등급: 매우낮은위험 |

주1)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따라서 최대 원금전액손실 가능성이 있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
◇ 당사는 랩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설명서 68호 A4
(2026.11.20 개정)

# MMW형 CMA설명서

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

##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

- (행사요건)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대상 금융상품)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
- (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)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
- (해지절차)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

##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
- (행사요건)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.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자료열람요구권 안내)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.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(일부 자료는 5년)동안 보관합니다.
  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

○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

##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민원신청 → 사실조사 → 민원회신 → 민원인 수용여부결정 → 수용시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*

-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당사 민원채널로 직접 접수하시면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.

| 접수처 | 접수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전자민원접수 |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<br>한국투자앱 | 전자민원접수)민원접수<br>고객지원)소비자보호광장)민원접수 |
| 영업점민원창구 | 서면(민원신청서) | - |
| 본사 민원담당부서 | 이메일(minwon@koreainvestment.com),<br>우편, FAX(02-3276-4332) | 소비자지원부(02-3276-4334) |

##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분쟁조정신청 → 사실조사 → 조정안 제시 → 양 당사자 수용여부결정 → 수용시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*

*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| 접수처 | 연락처 | 바로 가기(인터넷) |
|---|---|---|
| 금융투자협회 | 02-2003-9426 | (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197/sub040104.do) |
| 한국거래소 | 02-1577-2172 | (http://sims.krx.co.kr/p/Drct0201/) |
| 금융감독원 | 1332 | E-금융민원센터 링크(www.fcsc.kr)(PC) |

◇ 당사는 랩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| 판매직원 확인사항 |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<br>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(Tel. )<br>직위 : _____ 직원명 : _____ (서명) |
|---|---|

설명서 68호 A4
(2026.11.20 개정)